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48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48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소1346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10.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소134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의 회장인 D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E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100%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E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9.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E코인 투자금 11,85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D과 피고 C의 약속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금을 전부 보전해 주지도 않고 6,800,000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미지급 원금 5,050,000원(11,850,000원 - 6,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9.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로 E코인 투자금 11,8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투자금 중 6,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E코인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¹⁾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20. 12. 30.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로부터 사기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의 회사성립일도
원고의 투자금 지급 이후인 2021. 7. 20.이다.